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5.26)

#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기]

(

# 목 차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4	거창군 온천의 공동수급 관리 조례안 -----	17
5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5.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5. 12.

## 2. 개정이유

-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규제개혁추진단 '폐지' (안 제3조)
- 나. 규제개혁 분장사무 업무 이관 (안 제3조)
  - 규제개혁추진단 ⇒ 기획감사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3. 31. ~ 2015. 4.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

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5.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5. 12.

## 2. 개정이유

-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추가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특별휴가 대상을 신설함(안 제23조제11항)

-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신설)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조직개편사항 반영, 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 자 → 사람, 잔무 → 남은 업무, 행정안전부령 → 총리령  
여자 → 여성, 전염병 → 감염병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3. 23. ~ 4. 1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3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추가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특별휴가 대상'을 신설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조직개편사항의 반영, 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음

##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전문개정 2010.7.15.]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5.3.11.]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

### 제20조(특별휴가) ①항 생략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 ⑦ 삭제 <2005.6.30.>
- ⑧ 삭제 <2005.6.30.>
-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 □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 (이하 생략)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5.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5. 12.

## 2. 제정이유

-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나.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교육여건 개선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라.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2,60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3. 13. ~ 4. 03.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결과 요약서 붙임)

○ 의견제출자 : 399(단체 6, 개인 393)

○ 의견 미반영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등에 의한 지원대상에 관하여,
- **안 제3조에서**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의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 **안 제6조에서**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7.22>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5.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5. 12.

## 2. 제정이유

- 가조온천지구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가. 군유 온천공의 온천수 급수권자를 정함(안 제3조)

- 급수권자 : 군수

### 나.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온천수 공급급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함.

### 다.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시설분담금 납부
- 시설분담금은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설치에 사용

### 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
-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기본요금과 초과 요금의 합계로 징수

**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온천법」 제20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4. 09. ~ '15. 4. 2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조온천지구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 균유 온천공의 온천수 급수권자를 군수로
- **안 제6조에서**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온천수 공급급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급수 계약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시설분담금 납부와 시설분담금의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설치 등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에서**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 산출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3조에서**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안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음

## 6.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온천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4.6.3., 타법개정]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중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飲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 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3.7.16.>

[전문개정 2011.5.30.]

□ 「온천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sub>3</sub>-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sub>2</sub>Cl<sub>4</sub>)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sub>2</sub>HCl<sub>3</sub>)은 0.03mg/L 이하일 것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



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27호, 2015.2.3., 일부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 7. (생략)
- ② (생략)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5. 5. 12.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5. 5. 12.

### 2. 제정이유

- 수승대 진출입 자동화시스템 설치, 시설 운영경비 증가 등에 따른 수승대 시설이용료 조정 및 징수 기준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가. 주차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시설이용료 징수 금액 변경 및 축제극장 시설이용료 징수 기준 신설(안 제7조)

나.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순화

- 인 → 명      동일 → 같은      썰매장 → 썰매장, 축제극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4. 20. ~ 5.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수송대 진출입 자동화시스템 설치, 시설 운영경비 증가 등에 따른 수송대 시설이용료 조정 및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7조에서** 주차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시설이용료 징수 금액 변경 및 축제극장 시설이용료 징수 기준 신설을,
  - **안 제8조에서**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순화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음

## 6. 참고자료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9호, 2014.5.28., 일부개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63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76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3.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

#### □ 「주차장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3호, 2014.3.18., 일부개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